

(國)(外)(事)(件)

審官의 裁量과 賠償責任

<日本東京高法 1981年 6月 25日 判決, 1980年(ネ)第2345號,
原審東京地法 1965年 第6528號>

1. 抗訴人 : X
2. 被抗訴人 : 特許廳(y)
3. 判決
4. 事件概要

抗訴人인 X는 A發明에 대해 1955년 12월 2일자로 特許를 出願하여 57년 4月 10일에 拒絕査定되어 이어 抗告審判을請求하였다. 特許廳(y)은 第1引用例에서 61년 4月 2일에 本請求는 成立되지 않는다고 審決하였으므로 그 審決의 取消訴訟을 提起하였던 바 審決取消의 判決이 있었다.

그러나 y는 이에 대한 特許審查를 하지 않고 66年 4月 8日에 本件 抗告審判의 청구는 成立되지 않는다 하여 다른 事由로써 容易하다고 두번째의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X는 審決取消訴訟을 提起하지 않고 A發明에 대하여 Y가 特許査定을 하지 않았음은 特許廳擔當官에게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違法行爲가 있으므로 特許取得權利를 侵害당하였다 하여 損害賠償의 請求를 하기에 이르렀다.

5. 判決要旨

第1回째 審決에 대하여 法院은 容易實施가 可能할 정도로 記載하였다고는 認定할 수가

없으며 第1引用例에서만 容易推考할 수가 없다 하여 審決을 取消한 것으로 認定된다.

그러나 特許廳擔當官은 이 判決의 確定으로써 當然히 A發明에 대하여 特許査定할 義務는 없으며 單只 第1引用例로서는 A發明에 대해 拒絕査定을 해서는 안된다는 拘束을 받는다는데 그치는 것이며 特許廳擔當官이 A발명은 第2引用例로서 容易하게 推考할 수가 있을 정도라는 理由에 의해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되지 않는다는 뜻의 第2回審決을 한 自體가 아무런 違法이 아니다.

또 特許廳擔當官이 새삼스럽게 X의 不利益을 위하여 A발명은 특허사정을 하지 않을企圖를 갖고 있었다는 X의 主張을 認定하기에는 不充分하다.

다음에 X는 第1回審決取消判決의 確定을 行政事件訴訟法 33條 規定으로 미루어 特許廳擔當官이 A발명에 대해 특허사정을 하게끔 拘束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行政事件訴訟法 33條 1項은 處分 또는 裁決을 取消하는 判決이 그 事件에 대해 傷害者인 行政廳 其他の 關係行政廳을 拘束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行政廳에 대하여

判決의趣旨에 따라 行政上의措置를 義務化하되 이에 反하는 所行이 되지 않도록 拘束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이를 本件에서 본다면 第2回審決도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되지 않는다 하여 A발명을 特許性이 없다고 거절한다는 점에서는 第1回審決과 同一內容의 심결이기는 하나 前記한 바와 같이 東京地法의 판결은 第1回의 審決이 第1引用例를 舉示하여 A발명의 特許를 거절한데 대하여 同引用例만에 의해 A발명의 特허를 거절할 수가 없다 하여 第1回審決을 取消하였던 바 第2回의 심결은 第1引用例를 舉示하고 A발명은 第2引用例에서 용이하게 推考할 수가 있을 정도의 것이라 하여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되지 않는다고 結論지웠으므로 同審決은 行政事件訴訟法第33條 第1項의 규정에 違反한 것이라 아님을 당연하다.

6. 解說

本件判決은 行政事件訴訟法規定向에 대한 特許廳이란 行政廳을 拘束하는 法理를 明白히 한 判決이라 하여 注目判決로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는 解釋들이다.